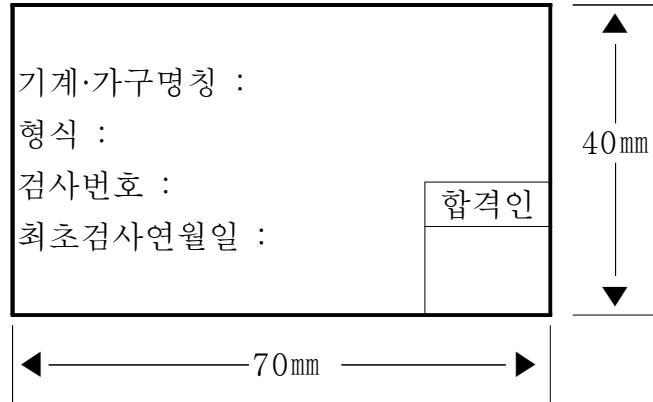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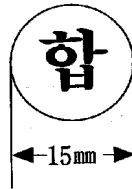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3] <개정 2019. 4. 23.>

기계·기구의 정밀도검사 합격표(제69조제4항관련)



비고 :

1. 재질 : 알루미늄판 또는 동판
2.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
3. 합격인 : 직경 15mm인 원형인("합"자 각인)



4. 기계·기구의 명칭은 다음 약호를 사용할 수 있다.

- 가. AT : 사이드슬립측정기
- 나. BT : 제동시험기
- 다. ST : 속도계시험기
- 라. HT : 전조등시험기
- 마. BST : BT와 ST의 복합기기
- 바. GT : 가스누출감지기
- 사. TT : 택시미터주행검사기